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 방 교 육 재 정 교 부 금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기준재정수요 산정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안 제8조)

나. 교육 취약계층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해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공립·사립 대안학교 포함(안 별표1, 측정항목 1)

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전 까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항목 신설(안 별표 1, 측정항목 2)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투·융자사업”을 “투자사업”으로 한다.

제8조 중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 (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 지 지원 비	가. 지역 간 균형 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 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계층 간 균형 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복 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 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 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 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정보화 지원 수급 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 사립 외국 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 적 배려 대상 학 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 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 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 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 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 학교, 사립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 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 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 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 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 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5. 교육기 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 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 ·이전(移轉) · 증설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 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6. 유아 교육비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지·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移轉)·증설비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아. 삭제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 지원	학급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고교무상교육 지원	가. 고교 입학금·수업료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9. 재정결함보전	가. <u>지방채 상환</u>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삭제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학교

6. 삭제 <2020. 10. 20.>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삭제 <2021. 11. 16.>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2017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누적인 것을 말하되, 해당 학교가 지정 취소된 연도에서 3년이 경과한 연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를 산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증설·개편 계획을 인정한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다음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충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라목 및 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다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 나.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삭제 <2019. 2. 26.>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 나. 이전되는 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사립학교 이전비**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자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9. 2024년도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20. 측정항목 제5호사목에서 사립학교의 “중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중설·증원에 수반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 학교의 중설 교실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u>투·융자사업예산</u> 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제6조(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부금의 반환 또는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u>투자사업예산</u> 을 집행한 경우 :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②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 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	제8조(전입금 세출예산 협의 등) ② 시·도의 <u>교육감</u> 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 <u>교육감</u>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개시하고, 시·도의 <u>교육감</u>이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5일 전까지 그 협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시·도의 <u>교육감</u>은 시·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u>교육감</u>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현행				개정안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공립·사립 특수학교(이하 “교부금산정 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1. 교직원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u>공립·사립 고등학교</u> , <u>공립·사립 특수학교</u> 및 <u>공립·사립 대안학교</u> (이하 “교부금산정 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u>사. 사립 학교이전 건축비</u> <u>부족분 지원</u>	(생략)	(생략)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u>사. 사립 학교 이전 (移轉)·증설비</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u>교부금산정 기준 학교의 증설 교실 수</u>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u>
	<u>아. 학교 기숙사 시설비</u>	(생략)	(생략)		<u>아. 삭제</u>	<삭제>	<삭제>
9. 재정결함보전	<u>가. 지방 교육채 상환</u>	(생략)	(생략)	9. 재정결함보전	<u>가. 지방채 상환</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별표 1 비교

현 행	개정안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삭 제>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 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말한다)	자. 「초·중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u>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u>
<신 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u>대안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u>
참.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차.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 설>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자. <u>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u>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라목·사목 및 아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 <u>라목 및 사목의</u>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7.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u>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u> 은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17.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u>사립학교 이전비</u> 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를 지원한다.
19. <u>2022년도</u> 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9. <u>2024년도</u> 분까지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신 설>	20. <u>측정항목 제5호사목에서 사립학교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7제2항에 따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증설·증원에 수반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 학교의 증설 교실을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락 처	(044) 203 - 6997